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
제출 연월일	2015. . .

기획예산과 심사필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、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**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**

1)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”로 개정(제1조, 제3조)

2)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, “지역사회복지”를 “지역사회보장”으로 개정(제명 및 제1조 ~ 제3조의2)

나. **조례가 확장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**

1) 제2조(기능)제1항 각 호 정비

2) 제3조(구성)제1항 정비

- 구성 인원 : “30명 이하”에서 “40명 이하”로 개정

3) 제6조(위원의 임기)제1항 내용 추가

- “다만,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”

4) 제9조(회의 등)제5항 신설

- “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

다. **동 단위 협의체 역할 부여** : 제3조의 2제3항 (대상자발굴, 복지자원연계 등)

라. **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**

1) 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정비 :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변경

2) 제3조(구성)제3조제3항 : “호선”을 “위원 중에서 호선”으로 변경

3) 제3조(구성)의 2 : “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동 사회보장협의체”로 변경

마. **부패영향평가에 따른 미비조항 신설 : 제7조의 2**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、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 1.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.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.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.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.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15. 9.10. ~ 9.30.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없음

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영향평가

상위법「사회보장급여법」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확대 사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조례가 가지고 있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.

1.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

가) 협의체 기능확대로 **'자생적인 지역사회 사회안전망' 구축**에 기여

1)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향 : '사회복지' ⇒ '사회보장'(개념전환)

2) 복지를 비롯한 문화, 교육, 주거, 고용 등 협의체 역할범위 확대

3) 동단위(징검다리) 협의체에 명확한 역할부여로 **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**

나) 협의체 인원수 증가로(30명 이상 ⇒ 40 이상) 주민참여기회 제공

1) 기능 확대에 따른 전문분야 분권화를 위해 참여 위원수 증원 가능

2) 관련기관、법인 등 연계、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분과 활성화

2.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

가) **사회보장지표 개발、연구** 기능이 추가되어 **전략적인 복지행정의 기틀** 마련

1) 지역사회 사회복지 현황 및 향후 목표설정에 필요한 객관적 수치 개발

2) 분명한 정책 아젠다 설정으로 복지분야 세부운영계획 도출 및 정책반영

나) 동 단위 협의체와 **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**하여 **민관협력 극대화 도모**

1) 지난해 출범한 징검다리 복지협의체를 활성화 하여 민간자원 적극 발굴

2) 명확한 역할 분담 및 동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문제해결능력 함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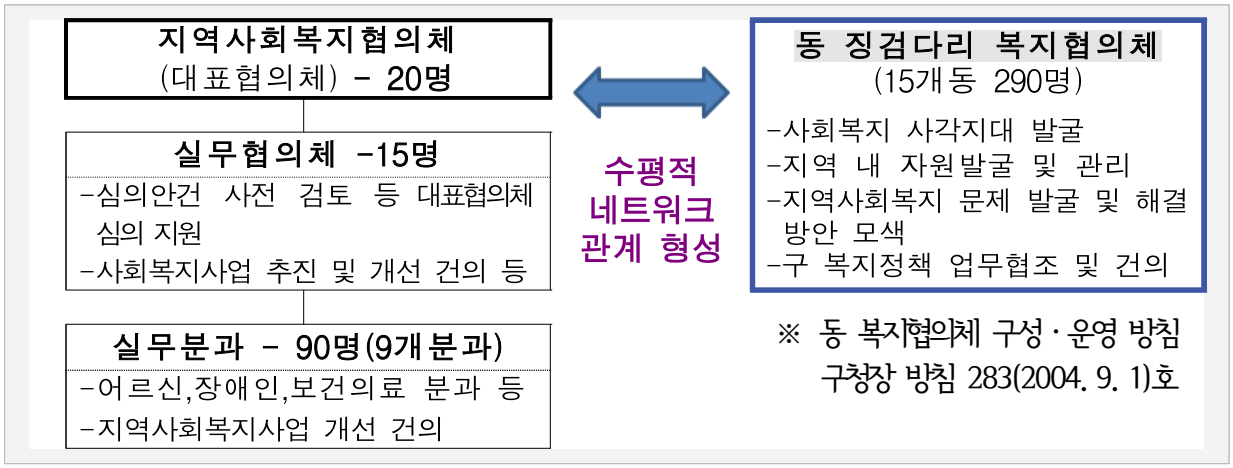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4”를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, 제7조”로 하고,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하고, 같은항 제1호 “지역사회복지계획”를 “지역사회보장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하며, 같은항 제6호는 삭제하며, 같은항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
5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<삭 제>
7.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8.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

제2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”을 “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0명 이하”를 “40명 이하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사회복지사업법(이하”법“이라 한다) 제7조의 2제2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1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3항 중 “호선하되”를 “위원중에서 호선하되”로 하며, 같은조 제4항 중 “30명 이하”를 “40명 이하”로 하며, 같은조 제5항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6조제2항”로 하며, 같은조 제7항 “지역사회복지”를 “지역사회보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3조의2의 제목 “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”를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하고, 같은조 제1항 “동 복지협의체”를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3.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제3조제2항과 제5항”로 하고, “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”는 “각 협의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다만,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”을 “각 협의체 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“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”를 “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각 협의체에 출석한”을 “회의에 참석한”으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예산”을 “인력 및 예산”으로 “원할한”을 “원활한”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	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, 제1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, 제7조 ---------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----------.
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"대표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,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	제2조(기능) ① ----------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----------.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	1. 지역사회보장계획 ----------
2.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	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	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	5.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	6. 〈삭 제〉
〈신 설〉	7.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	8.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사항 등

현 행	개 정 안
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, 단체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	② ----------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----------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	③ ----------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(이하 ----------.
제3조(구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부구청장, 주민생활복지국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	제3조(구성) ① ---------- 40명 이하 ----------. ② ---------- 법 제41조제3항 ----------.
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,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----------.
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④ ---------- 40명 이하----------.
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자활고용팀장,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	⑤ ----------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⑥ 〈삭제 2009.06.05〉	⑥ 〈삭제 2009.06.05〉
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, 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	⑦ ---------- 지역사회보장----------.
〈신 설〉	⑧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、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」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제3조의2(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) 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(이하 "동 협의체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3조의2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----------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	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 1.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. 지역보호체계 구축、운영 4. 그 밖에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(이하 "각 협의체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,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	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----- 해당 ----------.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명단 공개)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, 위촉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.	제5조(위원명단 공개) ---------- 제3조제2항과 제5항의 ---------- 각 협의체 ----------.
제6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-----. 다만,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〈신 설〉	제7조의 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제9조(회의 등) ① ~ ④ (생 략) 〈신 설〉	제9조(회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회의록) ①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그 밖에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 제14조(회의 수당)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,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0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-- 각 협의체 위원장 ---------- ② ---------- 공개하여야 한다. 제14조(회의 수당) 회의에 참석한 ----------. 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 ----------인력 및 예산을----------원활한 ----------.